

의안번호	제246호
의결연월일	2024.1.12.

-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. 4. 예산군수
 - 회 부 일 자 : 2024. 1. 5.
 - 상 정 일 자 : 2024. 1. 12.
- 제297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안전관리과장 : 김명주]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겨울철 대책기간 변경(안 제2조)
- 비상단계 운영체계 및 실무반원 편성기준 변경(안 제27조)
- 재난 대응 시 개인·위치정보 요청·제공 및 이용 신설(안 제40조)
- 재난 등 발생 시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제한 해제 신설(안 제60조)

- 비상근무 종료 후 휴무 신설(제60조)
-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성용)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대책기간중 겨울철 대책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,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·위치 정보를 요청·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
-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생략

5. 토론 요지

- 없음

6. 심사 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